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54
----------	-----

2000. 5.
문교보사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0년 4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19회 임시회 제3차 문교보사위원회
 (2000년 4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송영식 기획관리실장)

- 가. 제안이유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법률 제6216호 2000.1.28 개정) 및 동법시행령(대통령령 제16730호 2000.2.28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근거조항을 개정법령에 일치시키고,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거 정기회가 정례회 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동 제도를 도입하여 종전에 행정사무감사를 매년 10월 20일 이후에 실시하던 것을 정례회 기간 중에 실시토록 하고자 하며, 기타 현행규정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의 근거 규정 변경(안 제1조)
 ○ 종전 “정기회” 기간중 실시하던 행정사무감사를 “정례회”중 실시하는 것으로 변경(안 제2조제2항)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윤병국)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0.1.28 개정) 및 동법시행령(2000.2.28 개정)이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의 근거조항을 개정법령에 일치시키고, 지방자치법(2000.1.28)의 개정으로 정기회가 정례회로 변경됨에 따라 자구를 수정하고, 또한 감사 또는 조사활동은 “공무원복무규

정 제9조”에 의해 근무시간중에 실시하도록 한 것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9조 및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복무조례 제12조”로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감소속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55
----------	-----

2000. 5.
문교보사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나. 회부일자 : 2000년 4월 17일 회부
 다. 상정일자 : 제119회 임시회 제3차 문교보사위원회
 (2000년 4월 27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송영식 기획관리실장)

- 가. 제안이유
 ○ 교육부의 시·도교육청간 정원조정계획에 따라 지방교육행정기관의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및 동 규정 시행규칙이 개정(2000. 3. 1)됨에 따라 감축된 서울시교육청 총 정원을 본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 나. 주요골자
 ○ 총정원을 91명 감축함.(총정원 : 7,369명 ⇒ 7,278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윤병국)
 ○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2000.1.28 개정)의 근거 조항 변경에 따른 자구를 수정하고, 또한 교육부의 시·도교

육청간 정원조정계획에 따라 관련규정의 개정으로 감축된 서울시교육청의 총정원을 7,369명에서 91명이 감축된 7,278명으로 조정하고, 다만 정원을 초과하는 현원에 대해서는 200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한 것으로 간주토록 경과규정을 두는 것으로 상위 법령의 개정에 따른 자구수정 또는 정비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 없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교육감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56
----------	-----

2000. 5.
문교보사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나. 회부일자 : 2000년 4월 17일 회부
 - 다. 상정일자 : 제119회 임시회 제3차 문교보사위원회 (2000년 4월 27일) 상정·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송영식 기획관리실장)
 - 가. 제안이유
 - 공무원연금법 개정으로 연금사무의 일부가 교육감에게 이양되어 그 권한의 일부를 연금취급기관장인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하여 행정절차 간소화 및 책임행정체제를 구현하며,
 -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관련 조항의 자구를 수정하고,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수행하고 있는 무인가 교육시설의 단속 권한사무에 대한 위임사무의 구체적인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그 권한과 책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나. 주요골자
 - 소속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지급결정 권한을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함.(안 제5조제7호)
 - “사회교육시설과 학교부설 사회교육시설”을 “평생교육시설과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로 자구를 수정함.(안 제5조제11호)
 - 초·중등교육법 제6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인가 초·중등교육시설의 단속 및 폐쇄명령 권한을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함.(안 제5조제13호)

-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윤병국)
 - 본 개정조례안은 공무원연금법의 개정('99.1.29 개정, '99.7.30 시행)으로 교육감에 이양된 연금사무에 관한 권한 중 소속공무원의 재해부조금 및 사망조위금지급결정 권한을 지역교육청 교육장에게 위임하고, 사회교육법이 평생교육법으로 개정('99.8.31 개정, 2000.3.1 시행)됨에 따라 관련조항의 자구수정과, 현재 지역교육청 교육장이 수행하고 있는 무인가교육시설의 단속권한사무에 대한 구체적인 위임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개정에 따른 문제점은 없음.

-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 5. 토론요지 : 없음
-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 7. 심사결과 : 원안가결
- 8.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립학교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557
----------	-----

2000. 5.
문교보사위원회

- 1. 심사경과
 -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00년 4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
 - 나. 회부일자 : 2000년 4월 17일 회부